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 등 청원제도 개선〉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2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청원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	4
2. 청원 처리 예외 사유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 필요’ 추가(안 제6조)	11
3. 청원심의위원회 통합 설치·운영(안 제8조)	15
4. 공개청원 결정 절차 보완 및 간소화(안 제13조)	22
5. 반복 이송 청원에 대한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26
6. 반복 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16조)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1.
3.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바 있음.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 없이 공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조)

공공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나.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6조)

청원심의 또는 청원 처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안 제8조제1항)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원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제1항)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공개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

마.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바.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16조제1항)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원에 대한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청원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청원기관) ----- ----- -----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1.·2.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u><신 설></u>	3.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3. <u>법령</u>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는 <u>법인·단체 또는 기관</u> 4. <u>법령 또는 자치법규</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청원법」은 국민의 청원권 행사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¹⁾로, 동법 제4조는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을 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③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²⁾하고 있음.

1)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은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을 「청원법」에 따른 청원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³⁾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법」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을 청원기관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청원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해당한다고 규정(「청원법」 제4조제3호)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⁴⁾

[청원, 민원,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기관 비교]

「청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청원기관	행정기관 ⁵⁾	공공기관 ⁶⁾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개정안에서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안에서 신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안에서 신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시행령)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이 될 수 있으나, 해당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이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인지 여부에 따라 청원기관 유무를 판단해야 함.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사하는 권한이 법령에 따라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이 아님(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도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상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인 권한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권한과 관련해서는 청원기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청원업무매뉴얼”, 2022.12., p.21.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청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 신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청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개정안에서 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에 해당 조문 및 시행령 규정사항 기재)	(위에 해당 조문 및 시행령 규정사항 기재)

*주- 「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각 법령의 조문 순서와 관계 없이 유사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함.
 - 음영처리: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내용 표시

또한, 청원과 민원은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각각 근거하는 법률에 차이가 있으나, 실제 제도운영 상으로는 청원과 민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같은 내용이라도 국민이 제출하는 형식을 청원법령에 따른 청원으로 하느냐, 민원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하느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바,⁷⁾ 청원기관과 민원기관에 차이를 크게 둔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 이용에 혼란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8. (생략)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행정안전부, “청원업무매뉴얼”, 2022.12., p.8. 참고

개정안은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기관을 「청원법」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청원기관 해당 여부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청원인의 청원제도 이용에 편의를 제고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2. 청원 처리 예외 사유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 필요’ 추가(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 ----- ----- -----. ----- -----.
1. <u>국가기밀</u>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 <u>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u> -----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 6. (현행과 같음)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법」 제6조는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거나 사인 간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청원기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청원처리의 예외로써 명시한 것이며,

「민원처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민원 또는 고충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청원, 민원, 고충민원 관련 처리 예외 규정 비교]

「청원법」	「민원처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미처리 가능</u>	○민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미처리 가능</u>	○고충민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 가능 <u>다만, 이송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 가능</u>
- (현행)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개정안) <u>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u>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u>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u>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u>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u>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청원법」	「민원처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주- 「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각 법령의 조문 순서와 관계 없이 유사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함.

개정안은 접수된 청원 중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기관이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동 사항을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청원법」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은 2015년 전부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 민원처리의 예외 사항으로,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08년 폐지제정(「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고충민원의 각하 사유로 규정⁹⁾하였음.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2016.2.12. 시행)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2.29. 폐지제정 및 시행)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

3. 청원심의위원회 통합 설치·운영(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관련 조문 「청원법 개정안」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8조(청원심의회) ① ----- ----- -----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 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과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②·③ (생략)

1. ~ 3. (생략)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관련 조문 「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생략)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u>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u>(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청원법」 제4조는 청원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또한 동법 제3조, 제8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국회 및 지방의회를 제외¹¹⁾¹²⁾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¹³⁾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¹⁴⁾

한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¹⁵⁾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11) 「청원법」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청원법」 외에 각각 「국회법」(제9장 청원)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 - 제8절 청원)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청원법」의 일부 조항들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3)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14)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심의회와 청원심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국민이 요청하는 특정 사항(정보공개 또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정보공개심의회와 청원심의회의 도입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1996년에 도입되어 세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0년 12월의 최근 개정¹⁶⁾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상의 비효율 등¹⁷⁾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각 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 있음.

이에 비해 청원심의회는 2020년 12월 「청원법」 전부개정¹⁸⁾ 시에 도입되었는데,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비효율 등을 개선하려는 입법을 한 것과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17690호, 2020.12.22. 일부개정 및 시행(일부 조항은 2021.6.23. 또는 2021.12.23. 시행)]

17)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적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p.22.)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들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우 적더라도 별도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외부 전문가를 법정 비율 이상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4039호, 정부 제출) 검토보고 p.49.)

18) 「청원법」 [법률 17701호, 2020.12.22. 전부개정, 2021.12.23. 시행(일부 조항은 2022.12.23. 시행)]

차이가 있음.

[정보공개심의회와 청원심의회 관련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원법」
심의사항	정보공개 여부 등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구성	- 위원장: 1명 - 위원: 5~7명(위원장 포함) 공무원, 임직원, 외부 전문가 (2/3는 외부 전문가)	- 위원장: 1명 - 위원: 5~7명(위원장 포함) 공무원, 임직원, 외부 전문가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¹⁹⁾
관련 조문 및 제개정 시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u>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u>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u> 해야 함. -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1996.12.31. 제정, 1998.01.01. 시행 2004.01.29. 개정, 2004.07.30. 시행 2013.08.06. 개정, 2013.11.07. 시행	2020.12.22. 개정, 2021.12.23. 시행
	이 경우 규모,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u>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u>	(현행 규정 없음) (개정안)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과 협의를 거쳐 <u>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u>
	2020.12.22. 개정 및 시행	-

19) 「청원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종전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유사한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²⁰⁾을 고려하여 청원심의회에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관’ 부분은 개정안 제4조제1호~제4호에 모두 포함되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본청’이라는 표현은 중앙행정기관과 구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용어는 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청 단위

② 청원심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청원심의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20) 청원기관은 그 규모와 업무성격 등이 다른데 청원심의회는 소속기관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

- 「청원법」 제4조에 따라 소속기관도 청원기관에 해당되므로 청원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청원업무 매뉴얼”, 2022.12., p.34.)

중앙행정기관의 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²¹⁾되고 있는바, 동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4) (생 략)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③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생 략)

② (생 략)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본청"이란 시·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9. (생 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도 교육청 본청

2. 교육지원청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③ (생 략)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 략)

6.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 이송

7.~9. (생 략)

4. 공개청원 결정 절차 보완 및 간소화(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u>접수일부터 15</u> <u>일 이내에 청원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 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 ----- <u>접수일(제15</u> <u>조*</u> 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 <u>완완료일)</u> ----- ----- ----- . 다 만,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공개 부적합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하여 <u>공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u> <u>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u> 의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청원법」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개청원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과 관계된 경우, 청원의 내용·접수·처리상황·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²²⁾에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청원을 처리하는 제도임.²³⁾

공개청원 절차는 청원인이 청원서 제출 시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면, 해당 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²⁴⁾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²⁴⁾ 제출된 의견은 청원기관의 장이 취합하여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하며,²⁵⁾ 청원심의회

22)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생략)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24)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²⁴⁾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청원법 시행령」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 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에도 공개하게 됨.²⁶⁾

개정안은 공개청원이 신청된 경우 공개청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첫 번째는 공개여부 결정기간(현행: ‘접수일’부터 15일)과 관련하여, 청원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이 있는 경우²⁷⁾에는 기산점을 보완이 완료된 날(개정안: 청원서의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완료일’부터 15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개여부에 대한 청원심의회 심의(현행: 청원심의회 심의 필수)와 관련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관련하여, 청원인이 청원서를 보완하는 기간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26)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27) 「청원법」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동안에는 공개청원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기간을 공개여부 결정기간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원심의회 생략과 관련하여, 「청원법」 및 동법 시행령은 청원 처리시 원칙적으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청원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²⁸⁾ 공개청원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²⁹⁾ 공개 부적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28)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29)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반복 이송 청원에 대한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이송된 청원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청원법」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제출된 청원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하며,³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³¹⁾

30) 「청원법」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31)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생략)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략)

또한 동법 제15조는 접수한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³²⁾ 일부 청원의 경우에는 청원기관들이 다른 기관에 이송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반복 이송 청원 현황]

이송 횟수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합계
청원 건수	38건	23건	13건	13건	14건	8건	16건	125건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 2022.12.23. 청원24시스템(<https://www.cheongwon.go.kr/>)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2024.10.15. 까지 동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조정이 요청된 건수 기준

이와 관련하여 「청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청원제도를 총괄³³⁾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⁴⁾

32) 「청원법」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생략)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33) 「청원법」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다.

34) 「청원법 시행령」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생략)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인 ‘청원기관 지정을 통한 접수 권고’를 ‘청원기관 조정’으로 강화하면서 법적 근거 또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청원기관 간에 이송이 반복되면 청원 처리 지연³⁵⁾이 계속되고 청원인이 법률에 따라 예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개정안은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청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³⁶⁾³⁷⁾

35) 「청원법 시행령」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6) 유사 입법례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기관으로서 그 처리기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5. (생 략)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21.(생 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⑤ (생 략)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8조(민원의 분류) ① 총괄기관은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처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처리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민원은 총괄기관이 민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민원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등을 처리기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류를 할 때 2개 이상의 행정기관등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을 협조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류를 할 때 민원의 내용에 다수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제2항에서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청원법」 제4조의 청원기관에는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³⁸⁾되는바, 안 제1항(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이 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임.³⁹⁾

개정안 제2항에서 ‘국회’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제3조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하여 「청원법」의 일부 조항(제8조~제10조, 제

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민원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다수의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이송 및 재분류) ①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간 민원의 이송은 총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이 해당 행정기관등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관 기관을 명시하여 총괄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행정기관등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총괄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괄기관이 재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처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이송하거나 재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처리기관은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 행정안전부는 소관이 불명확하여 이송되는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8)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9) 현행 「청원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청원법」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다.

11조제2항, 제13조~**제15조**, 제21조~제23조)의 적용을 제외⁴⁰⁾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에 개정안(안 제15조의2 신설)이 포함되도록 현행법 제3조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0)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제9장 - 제123조~제126조 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제5장제8절 - 제85조~제88조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6. 반복 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 ----- ----- -- <u>정당한 사유 없이 2건</u> ----- ----- ----- ----- ----- 1회 이상 알려야 -----.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 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6조는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반복청원이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이중청원이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다른 청원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청원법」은 반복청원이 2건 이상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6조제1항), 이중청원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송받은 청원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복청원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므로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제16조제2항).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은 「민원처리법」에도 반복민원 및 중복민원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⁴¹⁾.

「청원법」과 「민원처리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법률 모두 제1항에서는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청원·반복민원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여러 기관에 대한 이중청원·중복민원을 규정하면서

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송받은 기관에서의 처리방법은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반복청원·반복민원과 이중청원·중복민원의 동일성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규정 형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나, 제1항의 반복청원 및 반복민원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반복청원·반복민원, 이중청원·중복민원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청원법」	「민원처리법」
반복청원 반복민원	-제16조제1항- 청원기관의 장: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 →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음. *종결처리 시 청원인에게 통지	-제23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할 수 있음 *종결처리 시에는 통지 규정 없음.
이중청원 중복민원	-제16조제2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 → 소관 청원기관에 이송 → 이송받은 청원기관의 장: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	-제23조제2항-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민원을 이송받은 경우 → 이송받은 행정기관의 장: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동일성 판단 기준	청원기관의 장: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 포함)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행정기관의 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특히, 「민원처리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3회 이상의 반복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종결처리에 대한 통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데, 「청원법」은 반복청원의 횟수에 관계 없이 종결처리 시마다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반복청원이 많은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비해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임.

개정안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통지를 ‘1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초 접수한 반복청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한 청원은 종결처리 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처리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제1항- 청원기관의 장: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u>2건 이상</u> 제출한 반복청원 →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음. *종결처리 시 청원인에게 통지	-안 제16조제1항- 청원기관의 장: ----- ----- <u>정당한 사유없이 2건 이상</u> ----- → (현행과 같음) *----- <u>1회 이상</u> ----- 통지

문 의 처
02)6788-5339